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0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김정호·박 정·김남희

허종식 • 박희승 • 윤후덕

이수진 • 전재수 • 이훈기

정성호 · 정준호 · 임미애

이연희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이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75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각 공항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조성한 자금은통합적으로 운용·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군용비행장과 달리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료사업·건강증 진사업 추진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 이 있으며,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탄력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항소음원인 제공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김해 공항의 경우 최근 5년간 착륙료 수익은 487억원인데 김해공항 소음대 책지역에 사용된 자금은 152억원에 불과하여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 원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 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민복지사업으로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19조의2 신설).
- 나.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실시되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단서).

- 다.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면제함(안 제19조제2항).
- 라.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 중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 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단서 신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단서 중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을 "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교육문화사업 등"을 "교육문화사업, 의료사업, 건강증진사업 및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각 호의"를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로,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전부를"로, "제23 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를 "지원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비율"을 "지원절차"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소음피해지원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소음피해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제외하고 소음피해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 절차, 이의신청, 소멸시효, 환수에 대해서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9

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로 본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성된 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	⑤			
・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	<u>제4</u>			
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u>정하는 사업은</u> 시설관리자 또				
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	①			
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	1			
(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사업, 의료사업, 건강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	증진사업 및 소음피해지원금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	지급 등			
한다.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	②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 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 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u>지원</u> <u>비율</u>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여	비따	라 :	조성된]	<u>가</u>
	금으로 제1형	항 각	호의	<u> </u>		
			- <u>전투</u>	<u> 를</u>		
				- <u>지원</u>	하	여
	<u>o</u> }					
	3				- <u>지</u>	<u>원</u>
	<u>절차</u>					
제	19조의2(소음	유피해	지원	금	지	급
	<u>기준 및 절</u>	하 등) ①	소음	-피	해
	지원금은 대	통령	렁으.	로 정	하	<u>는</u>
	기준 이상의	소	음피	해를	입	은
	소음대책지역	후 주	민에	게 지	급	<u>한</u>
	<u>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제외하고 소음피해지원금에 대

한 신청 및 지급 절차, 이의신

청, 소멸시효, 환수에 대해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

률」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

제23조(자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로 본다. 제23조(자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만</u>, 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라 조성된 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